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LINC 3.0(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2022. 1.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주요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 3

Ⅲ. 사업 주요 추진계획(안) ····· 6

Ⅳ. 선정 및 평가 계획 ····· 12

Ⅴ.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 19

Ⅵ. 향후 추진일정 ····· 26

[붙임]

1. LINC 사업 성과평가 中 교원 업적평가 및 참여 관련 지표
2. LINC 3.0 사업 모형설계 예시
3. 고등교육법 상 분교 현황(2021년)
4. 연합형 LINC 3.0 사업단 구성 시 협력대학 관련 참고
5. 1~2단계 LINC 전체 사업기간(10년) 연속 참여대학 현황
6.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Ⅰ. 추진 배경

1 추진 필요성

❑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산업 지형과 일자리 재편 등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 직면**

※ 신기술 도입·활용 확대로 '2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8,500만개 일자리는 자동화 등으로 대체되고, 9,700만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WEF, '20)

○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산학연협력**은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요인**

■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社
■ (독일) 아헨공대와 'Speedfactory' 프로젝트로 획기적 생산기간 단축(3주→5시간)한 아디다스 社

❑ 산학연협력 고도화로 산업계의 혁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대학은 지식·기술 창출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 우수인재 공급 외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혁신수요** 충족에는 다소 **부족**

※ 기술개발 아이디어 원천('19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 회사내부 29.9% vs **대학 0.7%**

○ 지식창출 비용 상승 등 기업의 혁신여건 변화 속에서,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 전초기지'**로서 **대학의 능동적 역할** 강화가 시급

※ 빌 드레이퍼(실리콘밸리 최초 벤처캐피탈리스트), "스탠포드 대학의 존재가 실리콘밸리 탄생을 이끌어냈으며, 시장의 혁신적인 기술은 대학이 먼저 발견.연구하는 경우가 다수"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공유 · 협력 확대

○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협력 가능성 증가**

○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혁신주체인 **산학연 간 선순환구조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구축 절실

* '25년까지 디지털·그린 뉴딜 등에 총 160조원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2 추진 경과

❑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 추진

○ ('04~'11)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친화적 문화 도입

* 산학협력중심대학,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지역거점연구단 등

○ ('12~'16, LINC) 기존 유사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개선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교육개혁협의회 보고(국무총리 주재, '11.1.)

※ ('16년 기준) 일반대 57교 2,218억원, 전문대 30교 188억원 지원

○ ('17~'21, LINC+) 대학·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축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 ('21년 기준) 일반대 75교 2,957억원, 전문대 59교 945억원 지원

❑ LINC 3.0 (3단계 LINC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정부 산학협력 지원정책(LINC, LINC+ 사업 중심) 효과성 분석 연구 : '19.4~12.

○ LINC+사업단장 및 산학협력단장 대상 간담회(2회) : '20.2.

○ LINC+사업 주제별·영역별 기초분석 이슈페이퍼 : '20.2~6.

○ 「LINC+ 후속사업」 기초 기획연구 : '20.7~12.

○ 국회의원 주최, 산학협력 발전방향 포럼(2회) : '20.11.~12.

○ 「LINC+ 후속사업」 심층 기획연구 : '21.2~12.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대학 산학연협력 전문가 토론회 : '21.3.3.

○ 국무총리 주재, 제1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토론 : '21.3.4.

○ 부처(사업)간 연계·협업을 위한 범부처 실무회의(1차) : '21.4.14.

○ 제6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3단계 LINC 추진방향 심의 : '21.4.30.

○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토론회 : '21.6.2.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주년 기념 포럼 : '21.9.15.

○ LINC 3.0 사업 기본계획(시안) 공청회 : '21.12.24.

Ⅱ. 주요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1 그간의 주요 성과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 **(대학 특성화)** 대학 **강점분야** 중심 역량 집중으로 다양한 **특화 모델 구축**

※ [우수사례] 국민대 미래자동차 특화 산학협력

- **미래자동차** 분야로 특화, GM·벤츠 등 **산업체 경험 교수 영입** 및 산업계 인사의 **교과과정 구성 참여** 등 혁신인재양성 체계 구축 및 자율주행차 실습환경 개선
-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기업협업센터(ICC)' 구축**,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중소 부품기업 등 **100여개 가족회사로 구성된 '산학협력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애로기술 자문 및 산학공동기술개발 등 추진

○ **(자립화 기반)** 기술사업화·민간투자 등 **新 수익원 확보**로 자립화 기반 마련

※ LINC참여대학 평균 산학협력수익 '11년 68.0억원 → '19년 504.7억원으로 **7.4배 증가**

※ '19년 LINC참여대학(75교)에서 44개 대학기술지주회사(508개 자회사) 운영, **총 1,985억원 매출** 달성

○ **(인프라 강화)** 산학협력 지원조직 확충, 산중교수·정규직원 증가 등 산학협력기반 확충, 대학 구성원 **인식 제고** 및 산학협력 친화문화 확산

❑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 확충

○ **(산학연계 교육 확대)**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산학연계 교육을 **전 계열**로 확대, **문제해결·현장중심** 교육으로 **학생 취·창업 역량** 제고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수상작('18~'21) >

			
('21) Box Holder	**('20) 파커** (자전거·킥보드 겸용 거치대)	**('19) 괄약근 자동 조절기**	**('18) 청각장애인용 소리 시각화 안경**
근로자 작업 위험 최소화 및 파손위험 저감을 위한 손잡이없는 상자 운반기구	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킥보드 전용 거치대	치매환자 등의 활동 편의를 위한 EMG센서 활용 괄약근 자동조절기	Deep Learning 학습으로 외부 위험상황을 감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안경

- 특히 **산학연계 교육이 보편화**된 LINC+사업 참여대학은 미참여 대학보다 **높은 취업률 증가세***를 보여 산학연계 교육 **효과성 입증**

* 일반대 졸업생 취업률 연평균 성장률('17~'19) : 참여대학 2.3~2.9% vs 미참여대학 1.1%

○ **(맞춤형 모델)** 기업 전문가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사회맞춤형학과 확산***으로 **취업난-구인난 동시 해소**

* ('17년) 56개 협약반/1,349명 채용약정 → ('20년) 102개 협약반/2,981명 채용약정



❑ 산업체 혁신 지원 및 상생모델 발굴

○ **(기업혁신 지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동연구·공동장비 활용, 기업협업센터(ICC)* 운영** 등 경쟁력 제고 지원

* 대학 강점 분야와 산업분야를 연결, 애로기술 자문·특화 기술 장비 활용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 추진('20년 기준 55개 대학 내 228개 설립·운영 중)

< LINC 사업 참여대학 기업지원 실적 >

	산업체 공동연구		기술이전		공동활용장비 수익금	가족회사 수
	건수	연구비	건수	수입료		
'14년	3,510건	1,240억 원	2,000건	259억원	323.3억원	48,992개
'20년	4,697건	2,057억 원	3,148건	392억원	430.7억원	70,777개 ('19년)

○ **(상생모델 발굴) 지역문제해결**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 간, 대학-지역사회 간 **자생적 협력 추진**

- **<CDS 빅데이터 대학연합>** 한양대 등 **전국 LINC+참여대학** 공동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본소양**을 갖춘 인재(Citizen Data Scientist)' 양성 특화교육과정 구성·운영
- **<부산권 공유대학> 부산권 6개 LINC+ 참여대학**이 기업·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합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AI 기반 창업마케팅 강좌 개발 등 공유대학 구축

2 개선 필요사항

❑ 산학연협력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

○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에 비해 **산학연협력 국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한 수준

* '20년 세계혁신지수(GII) 전체 10위 대비, 산학 연구 협력 28위, 조인트벤처 계약 37위(WIPO)

○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 하며, 본격화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력**도 낮은 수준

*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는 6.77점(평균 6.76점)으로, 46개국 중 27위(IMD, '19)

❑ 산업계 수요 충족 및 대학 산학연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기존에는 개별학과·학부 위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인재양성**이 어렵고, 융합기술 중심 **신산업*** **인력 수요 대응**에도 **한계**

* 신산업분야 산업기술인력 부족율(대학원졸) : 12대 주력산업 2.4%, 4대 신산업 9.1%

○ **교원의 연구·논문 실적 중심**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며, 대학 산학협력을 총괄하는 산학협력단의 **본질적 기능 강화*** **필요**

* 산단장협의회 추계세미나('20.12.), "대학 내에서는 산단을 연구비 관리 기관 정도로 인식... 조직 불안정성, 전문성 저하 등 조직체계 문제를 개선하여 능동적 기획 기능 강화 필요"

❑ 대학 · 산업계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필요

○ 다양한 우수 모델 발굴·확산에도 불구, 대학별 산학연협력 추진 기반·성숙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체계**의 한계

※ 사업단장 간담회('20.2), "대학별 산학연협력 기반 및 활동의 성숙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유형 필요... 대학 간 경쟁 중심은 지양하고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산학협력을 희망하는 산업계**는 대학 간 폐쇄성 등으로 대학이 보유한 자원(교원, 보유기술, 지원활동 등) 등 **정보접근에 한계**

※ 산업체 FGI('20.10.), "대학에 대한 정보 제한, 네트워크 취약으로 대학 **협력 파트너를 찾기 어려워**... 문의한 대학에서 해결이 어렵더라도 **다른 대학과 연계해주면** 좋겠음"

➡ 대학의 인재양성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산업 지원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산업계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추진

Ⅲ. 사업 주요 추진계획(안)

1 비전 및 목표

비전

산학연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

목표

산학연협력 성장모델 확산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 육성

추진 전략

1. 미래산업 대비 인력양성 체계화

- 신산업·첨단산업 등 산업분야 중심 융·복합형 교육과정 확산
- 프로그램 간 연계·융합으로 취창업 연계 제고 및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지원
- 비대면·글로벌 기반 교육모델 개발

2.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

- 강점분야 집중 기업지원 고도화 및 대학 산학협력 브랜드화
- 산학 공동기술개발, 실험실 창업 등 중장기 협력 기반 고부가 가치 창출
-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등 자립화·수익창출

3. 산학연협력 지속성 제고 기반 강화

- 교원업적평가 지속 개선 등 교원 실질적 참여 확대
- 산학협력단 중심 조직 정비 및 대학 산학협력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 산학협력 마일리지 안착 지원 등 쌍방향 협력 강화 및 결과 중심 성과관리

4.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

- 공유 생태계로 후발대학 성장 지원 및 산학협력 생태적 성장모델 구축
- 산학연 정보공유 플랫폼

2 주요 추진 전략

1 [산업수요 인재양성]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인재양성 체계화

○ **(교육과정 개편)** 개별 교과목 수준의 산학연계를 학과·이수구조 단위로 확대, **신산업·**첨단산업 등 **산업분야 중심**으로 **전공교육을 융합·재구조화**

※ **(한양대ERICA)** 로봇공학과 등 3개학과가 학과개편 없이 '인공지능 협동로봇' 공동융합과정을 개설, 산업체 요구 기반 프로젝트교과 등 기초~전문교과까지 이수구조 구축

- 정원 제도개선을 통해 신·증설되는 **첨단·융합학과***의 교육과정 활용 및 **대학원 참여 확대**로 고급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발굴·개발

* 첨단분야(AI, 빅데이터 등)별 학과 정원 조정 : ('21) 45교 4,761명, ('22) 33교 2,003명

○ **(취·창업 연계)** 산업체 참여 확대, 인재양성-기술지원 등 **프로그램 간 연계·융합**으로 취·창업 연계성 제고 및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지원

○ **(비대면·글로벌 모델)** 산업체 재직자의 온라인 팀티칭, 해외 대학과의 공동 캡스톤 디자인 등 **비대면·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산학연계 교육모델 개발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발굴·제작되는 온라인 교육과정 연계·활용

2 [산업혁신 지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

○ **(특화분야 집중)**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대학별 산학연협력 **브랜드화** 유도

○ **(고부가가치 창출)** 산학 공동연구·기술개발 등 **산업체와 밀착**하여 **기술 중심 중·장기** 협력으로 재편, **사업간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 4단계 BK21 또는 R&D과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협력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 산학공동기술개발 등으로 도출된 지식·기술의 **산업계 이전·사업화** 및 실험실 창업 등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 **(자립화 확대)** 가족회사 등급제, 유료회원제 등 **차별화된 기업 지원** 강화,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3 [대학 인프라] 산학연협력 지속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교원 참여 확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고도화**, 산학연협력 프로그램 **참여교원 실명제** 및 **실질적 인센티브*** 지급방안 마련 등

* 산학연협력 관련 보직수당 지급, 참여교원 성과급, 산업체 겸직 인정 확대 등

※ LINC 3.0 관련 교과목 수업 실적, 현장실습지도 실적 등 전임교원 참여비율 지표 신설

< LINC 사업 성과평가 中 교원 업적평가 및 참여 관련 지표 현황 >

LINC 1단계('12~'16)	⇒	LINC 2단계('17~'21)	⇒	LINC 3단계('22~'27)
▸ 규정상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 ① SCI 논문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 ②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대체 가능 비율		▸ 교수업적평가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신규 ① 실제 반영된 실적점수 ② 실제 반영된 교원 비율 ③ 산학협력 활동요소의 다양성 ④ 실적점수에 반영된 산학협력 활동 항목 비율		▸ **전임교원 참여 비율**신규 ① LINC 3.0 관련 교과목 수업 ② 산업체 재직자 교육 ③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④ 산학연계 교과목 신규개발 실적 등 ▸ 교수업적평가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배점확대
규정		**규정+실적**		**전임 참여비율+(규정+실적)**

○ **(산학연협력 조직 정비)** 산학협력단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된 산학연협력 추진기능을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재정비**

※ 산학연협력 정보담당관 지정, 전문인력 확충 등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 **(쌍방향 협력) 산학협력 마일리지** 안착을 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학 공용장비 개방, 기업지원활동, 서비스 등 발굴·확대

※ 가족기업 매출 증대 등 최종 수혜자인 기업·산업체까지 실질적으로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결과(Outcome) 중심 성과관리 강화**

4 [포스트코로나]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

○ **(공유·지속가능 생태계)** 대학 간 **특화분야 공유·협업** 활성화, 상호 컨설팅 등으로 산학연협력 **후발대학의 성장**을 지원

- **공유·협업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교육센터, 한국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회(KACE) 등 **구심점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 확산 유도

○ **(산학연 플랫폼)** 개별 대학 간, 대학-산업계 간 **장비·특허·지식정보**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및 통합적 운영체제 구축 검토

- 기술혁신선도형 대학은 **글로벌 기술이전,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고도화된 성과창출을 협력·지원**하는 등 **중추적 역할 수행**

3 사업 주요내용

❑ 총괄

○ 사업명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 추진기간 : **'22년 ~ '27년** (6년, 3+3*)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추진예산 : '22년 예산 기준 **3,025억원**(사업관리비 포함)

○ 주요 수행내용 :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 등을 바탕으로** 주요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자율적 산학협력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 유형 및 지원규모

- **(유형1) 기술혁신선도형** : 15교 내외(교당 55억원 내외, 총 825억원)
- **(유형2) 수요맞춤성장형** : 50교 내외(교당 40억원 내외, 총 2,000억원)
- **(유형3) 협력기반구축형** : 10교 내외(교당 20억원 내외, 총 200억원)

※ 교당 지원 예산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

【전 유형 공통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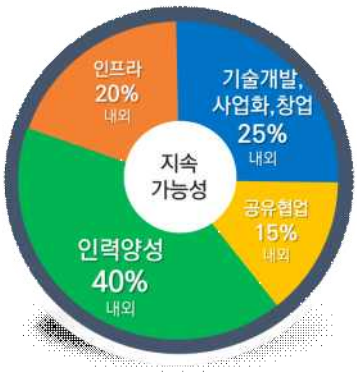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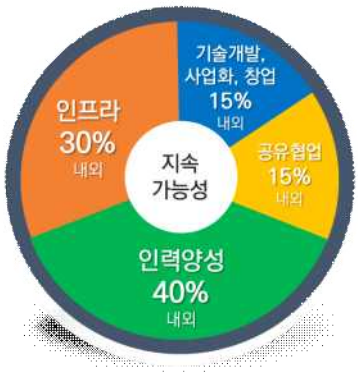
○ 전 유형 공통 추진사항은 **필수 추진사항**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동 내용을 반드시 포함

※ **교원인사제도는 '22.3월 기준으로 시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전 유형 공통 추진사항 >

- 대학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행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①,② 모두 충족)·**학사 제도** 고도화 및 **실제 반영률 제고**
  * ①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관련 실적(기술이전, 특허, 현장실습 지도, 기술자문, 산업체 공동연구 등)이 반영, ② 재임용/승진/승급 시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대체 가능
- 산학연 연계 **인재양성 및 창업교육,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업지원체계** 및 기업협업센터(ICC) 구축·운영
- 대학 간 **산학연협력 개방·공유·협업**을 통한 산학연협력 연계체계 강화

【사업유형별 주요 추진사항】

사업 유형	[유형1] 기술혁신선도형	[유형2] 수요맞춤성장형	[유형3] 협력기반구축형
목표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및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선도 **(Global 산학연협력 역량 선도)**	산업계/미래사회 수요 인력양성 고도화 및 기업지원 활성화 **(National 산학연협력 역량 선도)**	산학협력 기반 조성 및 대학산학협력 역량 강화 **(Local 산학연협력 역량 선도)**
사업 유형별			
중점 추진 내용 (예시)	▪ 대학원 참여를 통한 **글로벌 산학연협력** 및 교육 ▪ 고도화 된 기업체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극대화 ▪ **대학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투자회수실적 증진 ▪ 지식/기술기반 창업 및 창업기업 보육/성장 활성화	▪ 기업/학생 수요 **맞춤형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 맞춤형 **기업지원** 극대화 ▪ 창업교육 및 학생/교원 창업 활성화 ▪ **산학협력기반 교육환경 고도화**	▪ **산학연협력 관련조직 정비** ▪ 산학연계 기반 **교육 프로그램 도입·확대** ▪ **기업 애로기술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활동 ※ 경영, 마케팅 등 포함 ▪ 지역산업 참여 기반 산학연협력 프로그램 운영
참여 범위	▪ 학부+석·박사 (※ 대학원 참여 필수)	▪ 학부+석사 (※ 대학원 일부 참여)	▪ 학부
대학의 산학협력 기반 구축 현황 (예시)	▪ 연구 수행이 가능한 일반대학원생(정원내외) 기 확보 ▪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및 기술이전 수입 상위권 ▪ 교육·연구 역량을 토대로 기술사업화 등 산학연협력 성과 창출 중점 추진 가능	▪ 산학협력 친화적 교원·학사 제도 및 조직 기 구축운영 ▪ 산학연계 교육 학생 참여가 활발하며, 기업 참여도 증진을 통한 고도화 가능 ▪ 기술개발사업화, 공유협업 등 전반적 산학연협력 활동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성과 도출이 유망	▪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한 교원 업적평가 등 산학협력을 추진할 교내외 조직 등 기반 구비 ▪ 산학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확산 수요가 높고 발전가능성 충분 ▪ 지역 내 충분한 기업체 확보 및 중장기적 협력체계 마련

▶ 각 대학에서는 **사업유형별 주요 추진사항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유형적합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유형 선택·신청

❑ 사업 추진절차

구분	주관	주요 내용	시기
선정	대학	**1 대학별 산학협력 역량 진단·분석** ○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개선 ○ 대학 수행 산학협력 정부지원사업 분석 등 **2 LINC 3.0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유형 선택 및 대학 자체 산학협력 모델 수립 ○ 연도별 성과목표 제시 및 필요 예산 산정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전문기관	**3 사업대학 선정 및 예산 지원** ○ 대학 자체 발전계획과의 정합성, 논리성, 체계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정성평가 강화) ○ 대학 요구액 등을 기준으로 적정 사업비 배분	'22년 3~6월
사업 추진	대학	**4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및 성과창출** ○ 인재양성, 기업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 대학보유 자원 및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 강화	사업 선정 이후
	전문기관	**5 지속적 컨설팅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사업 선정 이후
	전문기관	**6 연차평가 및 차년도 사업비 지원** ○ 대학 자체 설정 목표 달성도 평가 ○ 목표 달성수준(성과미달 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차년도 3~4월

Ⅳ. 선정 및 평가 계획

1 사업 신청

❑ 신청 대상 및 단위

○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대학**, 2022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 제한

※ 사업 선정 이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재정지원가능 대학에 포함되는 시점까지 국고 사업비 지원 불가(대학 자체예산으로 사업 수행)

○ 신청단위 : **대학 전체**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사업단은 **본교와 통합**하여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 지원

※ 단, 캠퍼스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21년 기준으로 ①수도권 재학생 비중이 50%를 초과하거나, ②대학본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

- 대학별 **특성과 비전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LINC 3.0 수행을 위한 **대학 간 연합모형 설계 허용**

※ 연합 모형의 경우, 사업 선정평가 시 연합모델 구축 필요성, 연합 모형의 타당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성과창출 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 실시

< 대학 간 연합모형 설계 방안 >

- **(기본방향)** 연합형 사업단은 단일 주관대학-협력대학의 구조로 설계하되, 사업비는 주관대학에 일괄 교부하여 프로그램 교류 및 연계 추진
- **(참여방법)** 주관대학-협력대학간 협의를 통해 단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관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주관대학 소재지에 따라 권역 분류)
- **(성과관리)** 핵심성과 공통 및 자율지표의 경우, 주관대학과 협력대학간 협의를 통해 목표치는 자율적으로 설정 및 관리

❑ 신청 요건

○ **공통 요건 : ①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②사업참여 학사조직의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운영**

※ 각 공통 요건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증빙자료로 첨부·제출 필요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인정 기준 >

■ 참여 학사조직에 대해서 **①, ② 모두를 충족할 것**

①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관련 실적(기술이전, 특허, 현장실습 지도, 기술자문, 산업체 공동연구 등)이 반영

② 재임용/승진/승급 시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대체 가능

※ 교원인사제도는 **'22년 3월 기준으로 시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업유형별 신청 요건**

- (유형1, 기술혁신선도형) 별도 요건 없음
- (유형2, 수요맞춤성장형) 별도 요건 없음
- **(유형3, 협력기반구축형)** 사업유형의 취지를 고려하여 1~2단계 **LINC 전체 사업기간('12~'21, 총 10년) 동안 연속하여 참여한 대학은 신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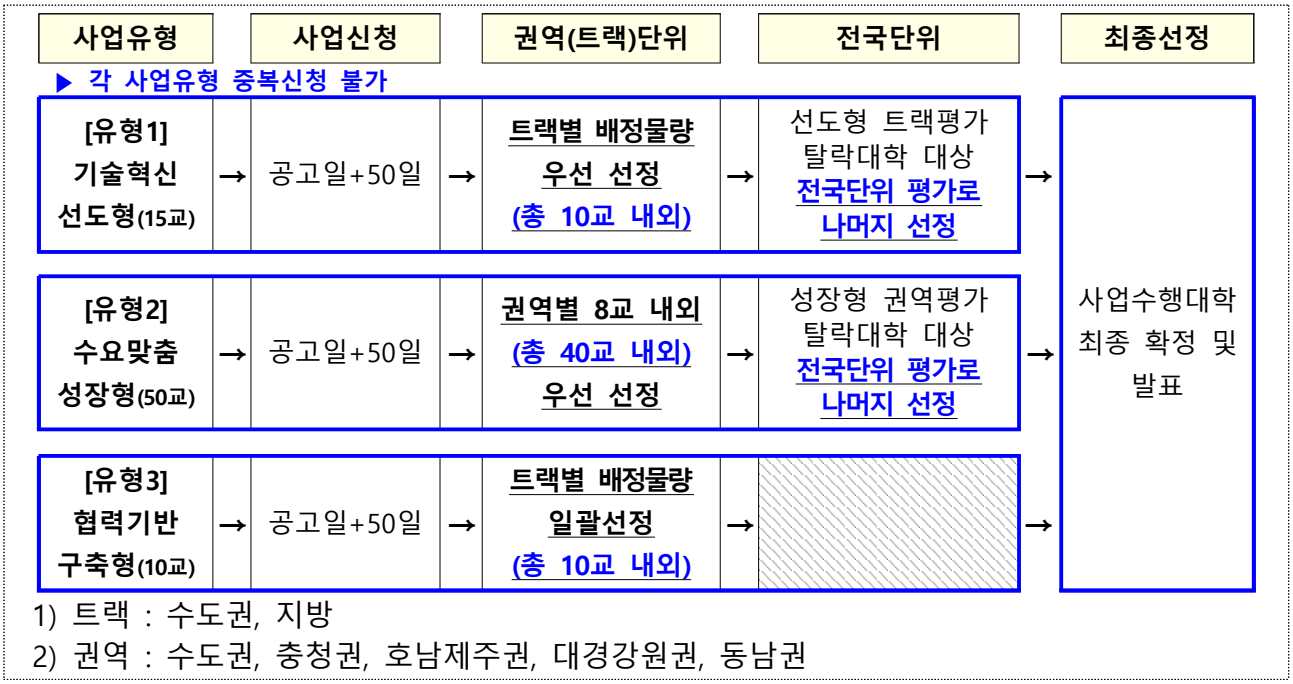
○ **신청 방식**

- 대학 자율적으로 대학의 특성과 여건, 산학연협력 역량 분석·진단,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관계 등을 토대로, **1개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지원**

※ 2개 이상의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 불가

2 사업 수행대학 선정

❑ 선정평가 개요



1) 트랙 : 수도권, 지방
2) 권역 :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유형별 권역(트랙)별 신청 상황 및 진입가능 최저점(만점의 60% 이상)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권역(트랙)별 선정 대학 수 및 전국단위 선정 평가 대상, 사업유형별 선정 대학 수 등 조정 가능

❑ 유형별 선정 및 평가 방안

1 [유형1] 기술혁신선도형

○ (선정규모) 트랙단위*(10교 내외) 및 전국단위(5교 내외) 선정

* 트랙별 신청 상황, 진입가능 최저점(만점의 60% 이상) 달성 여부 등에 따라 트랙단위 우선선정 대학 미달 시, 미달된 대학 수는 전국단위 선정 학교 수로 포함하여 선정

구분(트랙)	1단계(수도권-지방) 서면+발표·면담	2단계(전국단위) 서면+발표·면담	최종 선정
수도권	2교 내외	**트랙단위 선정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5교 내외 선정**	15교 내외 선정
지방	8교* 내외		

* 권역별 1교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권역별 신청 상황, 진입가능 최저점(만점의 60% 이상) 달성 여부 등에 따라 해당 권역 미선정 시 타 권역에서 선정 가능

※ 기술혁신선도형 최종 선정 대학이 15교 미달 시, 수요맞춤성장형에서 추가 선정 가능

※ '25년 단계평가 시 단계평가 하위 대학과 신규진입·유형전환 희망 대학 간 비교평가를 통해 이후 3년간('25~'27) 참여대학을 확정하는 등 질 관리 체제 강화

○ **(선정방식) 수도권-지방으로 트랙 구분**하여 **우선 선정 후**, 트랙별 선정 탈락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

○ **(선정절차)** ①**트랙단위** 사업계획 서면 및 발표·면담평가 → ②**전국단위** 사업계획 서면 및 발표·면담평가 → ③사업관리위원회 심의·확정

※ 1단계 트랙단위 평가 이후 일정 기간(약 10일 내외)을 두고 2단계 전국단위 평가 진행

- 1단계(트랙단위) **서면 및 발표·면담평가**를 통해 **수도권 2교 내외, 지방 8교 내외**를 우선 선정(총 10교 내외)
- 2단계(전국단위) **서면 및 발표·면담평가**를 통해 **5교 내외 선정**

2 [유형2] 수요맞춤성장형

○ **(선정규모) 권역단위*(40교 내외)** 및 **전국단위(10교 내외)** 선정

* 권역별 신청 상황, 진입가능 최저점(만점의 60% 이상)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권역별 선정 미달 시, 미달된 학교 수는 전국단위 선정 학교 수로 포함하여 선정

구분(권역)	서면평가 (권역단위)	발표·면담평가		최종 선정
		1단계 (권역단위)	2단계 (전국단위)	
수도권	15교 내외	8교 내외	**권역단위 선정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교 내외 선정**	50교 내외 선정
충청권	15교 내외	8교 내외		
호남제주권	15교 내외	8교 내외		
대경강원권	15교 내외	8교 내외		
동남권	15교 내외	8교 내외		

○ **(선정방식) 권역별 8교 내외**를 우선 선정 후, 권역단위 선정 탈락 대학 간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10교 내외** 선정

○ **(선정절차)** ①권역단위 사업계획 **서면평가** → ②사업계획 **발표·면담평가**(1단계 권역단위, 2단계 전국단위) → ③사업관리위원회 심의·확정

※ 1단계 권역단위 평가 이후 일정 기간(약 10일 내외)을 두고 2단계 전국단위 평가 진행

- **서면평가**(권역단위) 시 **권역별 15교 내외**(총 75교 내외)를 발표·면담평가 대상 대학으로 선정

- **1단계 발표·면담평가**(권역단위)를 거쳐 **권역별 8교 내외**를 우선 선정
- 1단계 권역단위 발표·면담평가 탈락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발표·면담평가**(전국단위)를 실시하여 **10교 내외**를 선정*

* 전국단위 선정 시 특정 권역에 전국단위 선정 학교 수의 50%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않음

3 [유형3] 협력기반구축형

○ **(선정규모) 트랙단위(10교 내외)** 선정

구분(트랙)	서면평가 (수도권-지방)	발표·면담평가 (수도권-지방)	최종 선정
수도권	4교 내외	2교 내외	10교 내외 선정
지방	16교 내외	8교* 내외	

* 권역별 1교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권역별 신청 상황, 진입가능 최저점(만점의 60% 이상) 달성 여부 등에 따라 해당 권역 미선정 시 타 권역에서 선정 가능

** 최종 선정시 특정 권역에 배정물량의 50%를 초과하여 배정하지 않음

○ **(선정방식) 트랙단위 평가**를 통해 일괄 선정

○ **(선정절차)** ①트랙단위 사업계획 **서면평가** → ②트랙단위 사업계획 **발표·면담평가** → ③사업관리위원회 심의·확정

※ 서면평가 이후 일정 기간(약 10일 내외)을 두고 발표·면담평가를 진행

- **서면평가**(트랙단위) 시 **트랙별 배정물량의 2배수** 내외(총 20교 내외)를 발표·면담평가 대상 대학으로 선정
- **발표·면담평가**(트랙단위)를 통해 **트랙별 배정물량 최종 선정**(총 10교 내외)

❑ 사업계획 세부 평가내용

○ **(기본 원칙)** 대학별 **특성과 역량**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산학연협력 모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 대학의 자율적 성과 목표, 목표 달성 의지, 산학연협력 모형 실현 계획의 적정성·구체성·체계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강화**
- 별도의 포뮬러(정량)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 **그간의 정량실적을 사업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시

○ **(유형별 특성 반영)** 대학 전반의 산학연협력 활동요소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되,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배점 설정**

- 사업유형 확대에 따라 사업유형별 적합한 대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체계화·세분화**

※ 기존 '대학의 여건과 산학협력 선도모델 추진계획 간 정합성' 외 **'사업 유형 설정의 적절성'**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추가

○ **(진입가능 최저점제 도입)** 대학의 총 득점이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평가 순위와 무관하게 **선정 불가**

○ **(LINC+ 종합평가 결과 연계)** LINC+사업 참여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LINC+ 사업 종합평가 결과를 선정평가에 반영

- LINC+사업 종합평가 결과, 성과미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평가 득점******의 2%에 해당하는 감점 부여**

* 종합평가 결과 총점의 100분의 60 미만을 득점하고, 실적 사후반영 별도 점검 결과 최종 성과미달대학으로 확정된 대학

** 서면 및 발표·면담평가 각각 감점 적용

- 2% 감점으로 인해 만점의 60% 미만 득점 시에도 선정 불가

○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은 선정평가에 반영(처분시 기준, 2021.1.1.~사업신청서 제출시)

※ 입시·학사비리는 '2020.1.1.~사업신청서 제출시'까지의 부정·비리사항을 반영

※ 적용대상 부정·비리사항 중 LINC+사업 수혜제한이 기 적용된 사항도 감점 반영

○ 사업계획 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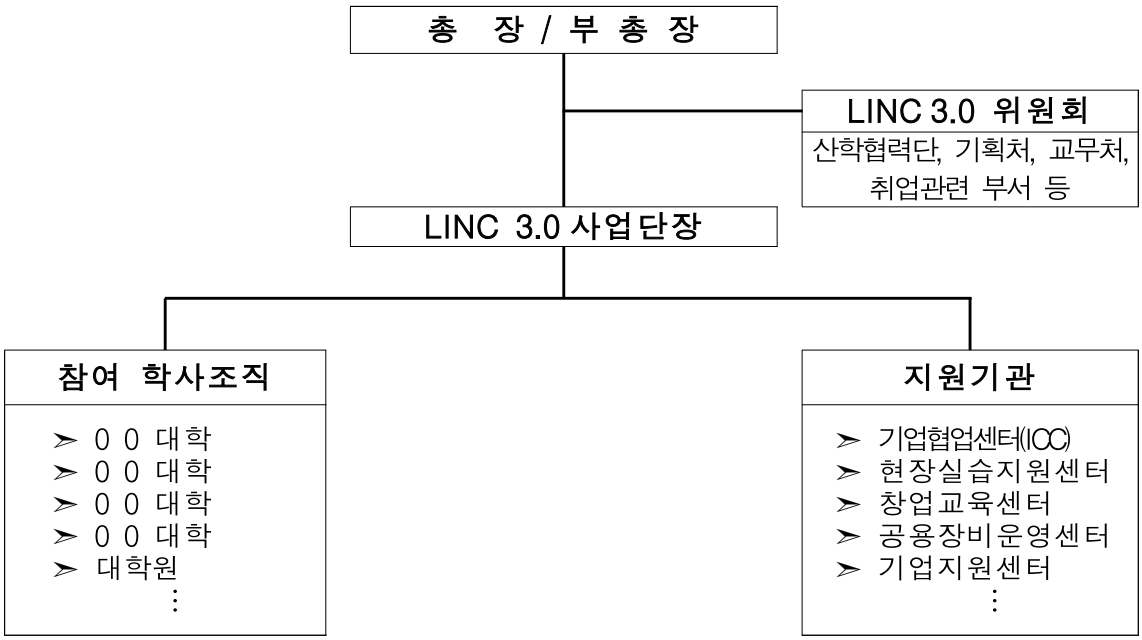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사업유형별 배점		
		유형1	유형2	유형3
비전 및 산학연 협력 체제	**1. 사업비전 및 목표의 적절성** ▸대학의 비전 및 목표와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대학의 여건과 산학협력 선도모델 추진계획의 정합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 유형 설정의 적절성 (※사업 유형 연계)	100	100	100
	2. 산학연 협력체제의 적절성 ▸산학협력단 조직 및 구성과 기능(역할)의 적절성 ▸LINC 사업단 조직 구축.운영 및 참여학사조직의 적절성 ▸LINC 사업단과 학과(부, 전공)와의 연계 활동 체계 및 전임교원 실질 참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산학연 공유·협업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제도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100	100	150
		200	**200**	**250**
인력 양성	**3.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혁신성** ▸산학연연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산학연연계 교육방법 모형 창출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신산업 기반 융·복합형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50	200	200
	4. 산학연 협력 교육환경 및 지원체계의 적절성 ▸산학연 연계 친화형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취·창업지향형 역량강화 모델 및 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50	100	150
		200	**300**	**350**
기술 개발 및 사업화	**5. 특화분야 산학협력 브랜드 창출의 적절성** ▸ICC 분야 선정, 구축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ICC 운영 성과 창출 및 브랜드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20	80	50
	6.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 창출의 적절성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산학공동연구 성과 창출 계획의 적절성	80	80	50
	7. 산학연 협력 가치창출의 적절성 ▸산학연 협력 성과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이전 및 창업 등 계획의 적절성 ▸산학연 협력 성과의 가치제고를 통한 수익창출 및 성과 환류 계획의 적절성	150	90	50
		350	**250**	**150**
공유·협업	**8. 기업연계 기반 공유·협업 활동의 실현성** ▸기업연계 공용장비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유료 가족회사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산학연간 쌍방향협업 계획의 적절성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적절성	50	50	50
	9.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공유·협업 활동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계획의 적절성 ▸공유·협업 활동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공유·협업 활동의 성과 창출 및 확산 계획의 적정성 ▸공유·협업의 지속가능성 계획의 적정성	100	100	100
		150	**150**	**150**
지속 가능성	**10. 예산 운영의 적절성**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절성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사업 유형 연계)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방지/연계방안의 적절성	50	50	50
	11. 성과관리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사업 유형 연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적절성	50	50	50
		100	**100**	**100**
총점		**1,000**	**1,000**	**1,000**

Ⅴ.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1 사업단 구성·운영

❑ 사업단 구성

< 사업단 구성(예시) >



※ 사업단 구성은 대학의 여건 및 사업모형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과 성과창출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대학본부 및 산학협력단 등 학내 타 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

○ **LINC 3.0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단의 주요 추진 사항 심의·의결 시 학내 유관 조직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도모

○ LINC 3.0 **사업단장**은 교무위원 또는 학무위원급으로 임명하여,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고 **학내 LINC 3.0 사업단의 위상 제고**

- 대학의 여건 상 사업의 성과창출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산학협력단과 LINC 3.0 사업단을 통합하여 단일조직*으로 운영 가능**

* LINC 3.0 사업단장은 산학협력단장 겸임 가능

○ 사업단은 **복수의 단과대학 단위 참여를 원칙**으로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를 구축, 확산에 유리한 형태로 자유롭게 구성

- 기술혁신선도형 사업단은 **일반대학원** 필수 참여
- 사업단 비참여 단과대학의 개별학과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학과(전공) 단위*로의 참여 허용**

* 단, 학과(전공)의 소속 단과대학의 교원인사제도가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운영 중인 경우에 한함

❑ 사업단 운영 사항

○ LINC 3.0 사업단 내에 **대학별 특화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마련**

※ 해당 조직 핵심인력 인건비는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나 사업 종료 시 대학에서 자체 부담

○ LINC 3.0 사업 성과의 **고도화·내재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단-산학협력단-대학본부 간 공유·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 중장기적 산학협력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역할 분담, 사업단-산단-본부는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역할분담,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 LINC 3.0 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수행 중 사업단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의 승인* 필요**

* 사업위탁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교육부와 협의 필요

○ 사업 수행대학과 사업단장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과 사업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성과,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컨설팅 내용, 연차·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주요내용은 변경 또는 해지 가능

2 사업비 편성 · 집행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원칙

○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 내 별도 계상

- 대학별로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비 항목 간 비율 조정의 자율성 부여**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는 **국고지원금 50% 이내**(최대 4천만원), **대학 자체 재원으로 50% 이상을 지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대학에서 지정한 교원(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은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수행대학의 부정 · 비리 사안에 대한 조치

○ **(대상)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등을 제출한 사안,**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사업 협약사항 위반 등**

- 동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교육부·감사원 등의 감사처분, 행정처분위원회의 행정처분,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 등 **대학의 책무성을 위반**한 사안 등도 포함*

* (근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 **(조치) 선정취소,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평가점수 감점,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지원액 삭감* 등의 제재** 조치 실시

* 삭감된 지원액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참여대학에 재배분 등 활용

※ 제재 수위는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의 기준을 적용(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정도, 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결정

※ 선정평가 시 감점 적용된 부정·비리 사안은 별도 사업비 감액 미실시

3 성과 관리 방안

❑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 **(주요 역할)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 성과평가와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 **(조직 구성)** 산학연 전문가*, **교육부 LINC 3.0 사업 담당국장, 한국연구재단 LINC 3.0 사업 담당 본부장 등으로 구성**

*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



❑ 성과 평가

○ **(평가 개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계획의 이행 실적, 사업 관리 및 운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

- **(성과미달대학 선정)** 매년 평가 시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된 대학은** 사업단 계약 해지(재진입 불가)

* **성과미달대학** : 연차(단계)평가 결과 **사업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준 미만을 득점한 대학(성과미달기준은 매년 심의·결정)

※ 성과미달대학의 **사업비 삭감** 또는 **사업단 퇴출로 인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참여대학에 분배

○ **(연차 및 단계평가)** 각 사업연도 집행 후의 성과지표 달성여부와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환류**

- **(연차 평가)** 대학별 제출한 LINC 3.0 실적보고서 평가* 후, **성과미달대학**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실시**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운영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 평가

- **(단계 평가)** 3년 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상위/중위/하위) 사업비 재배분 및 하위 대학(20%내외)은 **비교평가* 대상 포함**

  * '25년 단계평가 하위 대학과 신규진입·유형전환** 희망 대학 간 비교 평가를 통해 이후 3년간('25~'27) 참여대학 확정(단, 2년 연속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 제외)

  ** 생태적 성장 모델에 따른 사업유형 전환(협력기반구축형→수요맞춤성장형, 수요맞춤성장형→기술혁신선도형) 기회 부여

○ **(종합평가) LINC 3.0 사업 종료시점**에서 그간의 사업추진 및 운영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추진**

❑ 성과 지표

○ **(대학특성 반영)** LINC 3.0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각 대학별로 성과 관리 추진**

- 핵심성과지표 가중치는 사업모형 및 참여 학사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 이내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지표 비중 조정 가능***

  * 핵심성과지표는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추가·변경·삭제 등 조정가능

※ 핵심성과지표의 일괄부여 배점은 사업 유형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핵심성과지표 대학별 조정 예시 >

핵심성과지표	**일괄 부여 (80%)**	**대학 자율 조정 (20%)**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지표 1	**a**	1	2	1	3
지표 2	**b**	3	2	0	1
지표 3	**c**	0	2	3	3
…	**..**	…	…	…	…
합계	**80**	20	20	20	20

※ 핵심성과지표 총점을 100점으로 가정한 경우
※ 대학별 지표 중요도를 설정하여 가중치 조정
: 중요도에 따라 0~3점(정수단위)

○ **(성과지표 생태적 변화)** 성과지표를 **연간성과지표, 단계성과지표, 종합성과지표**로 구분

- 지표특성에 따라 **성과지표별 평가주기는 차별화하되,** 평가와 관계없이 **각 성과지표**(단계지표, 종합지표 포함) **관리는 매년 실시**

※ **[단계적 성과지표 항목]**

▸**연차성과지표** : 매년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지표

▸**단계성과지표** : 3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함이 적합한 지표

▸**종합성과지표** : 총 사업기간(6년) 종료 시 평가함이 적합한 지표

※ **[평가 단계별 적용 지표]**

▸**연차평가** : 연간성과지표 대상 평가

▸**단계평가** : 연간성과지표 + 단계성과지표 평가

▸**종합평가** : 연간성과지표 + 단계성과지표 + 종합성과지표 평가

성과지표(안)

1) 핵심성과 공통지표(대학 또는 사업단 전체실적)

- (종합) 취업률 변화
- (연간) LINC 3.0 사업 전임교원 참여 비율 신규
- (연간) 교원업적평가·인사제도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배점확대
- (연간) 산학연계 교육과정(표준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창업교과) 참여학생 비율
- (단계) 산학연계 교육과정(표준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참여학생 취업률 신규
- (연간) 기업협업센터(ICC) 운영실적(운영수입, 활동건수 등) 신규
- (연간) 대학창업 실적(교원 및 학생 창업건수, 창업기업 수익금 등) 신규
- (연간) 교수1인당 산업체(지역연계) 공동연구 실적(건수, 연구비, 지식재산권 창출 등) 배점확대
- (연간) 교수1인당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료(※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제외)
- (연간) 공용장비(지역사회 연계 장비) 운영실적(활용 기업(단체) 수, 운영수입 등)
- (연간) 산업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실적(운영 수, 참여현황 등) 신규

2) 자율 성과지표(예시) : 사업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별 자율 설정

- 산학연협력 활동 내재화 지수(3S 지수 활용)
- 대학(원)생 기술창업 및 실전창업 수(매출액, 고용창출인력 등)
- 기술(지식)사업화 실적 및 유지율
-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가족회사 운영 실적
- 창업 재정/공간(창의 실습실 등)/인력 지원 실적

○ **(3S 지수 도입)** LINC 1~2단계 사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산학연협력 활동의 내재화 수준'**을 측정

- 각 대학별로 산학연협력 **진정성, 공유·협업 수준,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칭) **3S 지수'를 개발하고, 정성평가 시 반영**

※ 대학별 지표 개발 및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단계평가('25년) 이후 핵심성과지표로 전환 검토

< LINC 3.0 사업 3S 지수(안) >

측정요소명	개념	요소(예시)
진정성 (Sincerity)	▸대학과 전임교원이 주체가 되고, 정규교육과정이 중심	▸대학본부 참여도, 전임교원 참여도, 산학연계 교육과정·방법 교수 실명제 등
공유·협업 (Sharing&cooperation)	▸대학의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시너지 창출	▸참여교원 협업 참여도, 협업 교육과정 개발·이수, 협업을 통한 기업지원·참여 달성도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제도 및 재정안정화 등 사업 성과의 지속·발전 가능성 고려	▸산학협력중장기 발전계획 이행, 사업비 대비 대학 자체 재정투입율 등

❑ 대학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 대학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의 LINC 3.0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통해 양성·배출되는 인재, 핵심 가족기업 등 핵심성과지표 외 추가적인 사업성과 파악을 위한 대상을 산정하고 그 성과를 지속 관리

○ 매년 연차평가 실시 이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 등 수행

❑ 성과관리 컨설팅

○ **(개요)**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실적의 내재화,** 연차별 **성과분석에 기반한 컨설팅**으로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창출·확산 지원

○ **(추진내용)** ① **사업계획 보완 서면**컨설팅 → ② **집중면담** 컨설팅 → ③ **행정 컨설팅** → ④ **성과공유·자율 컨설팅**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성과관리 컨설팅은 조정·변동 가능

○ **(컨설팅단 구성)** 평가결과와 컨설팅의 일관성 및 내실화를 위하여 평가위원과 산학협력 전문가 등으로 **종합컨설팅단** 구성 운영

Ⅵ. 향후 추진일정

○ LINC 3.0 사업 계획 공고 : ‘22.1월 초

○ LINC 3.0 사업 일반대 설명회 : ‘22.1월 중

○ 사업 가신청* 접수/발표 : ~’22.1월 말

* 본 신청 접수 이전에 '가신청'을 접수하여 지원유형별 신청대학 수를 전체 대학에 공개하고, 본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신청 접수 : ~’22.3월 초

○ 기술혁신선도형 선정평가

- 트랙단위 평가(서면+발표·면담) : ‘22.4월 초
- 전국단위 평가(서면+발표·면담) : ‘22.4월 중

○ 수요맞춤성장형 선정평가

- 권역단위 평가(서면) : ‘22.3월 중
- 권역단위 평가(발표·면담) : ‘22.4월 초
- 전국단위 평가(발표·면담) : ‘22.4월 중

○ 협력기반구축형 선정평가

- 트랙단위 평가(서면) : ‘22.3월 중
- 트랙단위 평가(발표·면담) : ‘22.4월 중

○ 3단계 사업관리 위원회 최종 선정 심의 : ‘22.4월 말

○ LINC 3.0 사업 선정 대학 발표 : ‘22.4월 말

○ 대학별 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 : ‘22.5월~

※ 국고지원금 교부 이전 각 대학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 상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붙임1 LINC 사업 성과평가 中 교원 업적평가 및 참여 관련 지표

□ LINC 사업('12~'16)

지표명	세부지표	산정방법 및 기준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	교수업적평가시 SCI급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배점 평균 ※ 최대 인정치 적용 안함	- 산식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양식 및 산식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산출
	재임용· 승진·승급 심사시 산학협력 실적물로 연구실적물 대체 가능 비율	

□ LINC+ 사업('17~'21)

○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E) = (A×2.0) + (B×1.0) + (C×0.5) + (D×0.5)

No.	항목	비율	가중치	실적
1	교원 승진·승급·재임용 기준 점수 대비 반영된 산학협력 실적점수 평균 반영 비율(%)	A	2.0	A × 2.0
2	교원 승진·승급·재임용 대상 교원 중 산학협력 실적 점수가 반영되어 승진·승급·재임용된 교원 비율(%)	B	1.0	B × 1.0
3	교원 승진·승급·재임용 심사 시 산학협력 실적 점수에 반영되는 산학협력 활동 요소의 다양성 비율(%)	C	0.5	C × 0.5
4	교원 승진·승급·재임용 시 산학협력 실적 점수에 반영된 산학협력 활동 항목 평균 비율(%)	D	0.5	D × 0.5
				E

□ LINC 3.0 사업('22~'27)

○ 신규**전임교원 참여 비율**= (사업 참여 활동 실적이 있는 사업단 참여 전임교원 수/사업단 참여 전임교원수)*100

No.	항목	산정방식
1	LINC 3.0 관련 교과목 수업 실적	LINC 사업단에서 인정한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창업교육 등) 3학점/학기 = 1.0명 교수 산정(※ 3학점 이하 비율로 산정)
2	산업체 재직자 교육 실적	12시간 교육/학기= 1.0명 교수 산정 (※ 최소인원은 5명이상으로 함)
3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실적	1과제/년 = 1.0명 교수 산정
4	산학연계 교과목 신규 개발실적	1개/년 = 1.0명 교수 산정

○ 배점확대**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 LINC+사업 대비 배점 확대**

❖ 교원업적평가 산학협력 실제 실적 반영률 지표 정의

○ 교원 승진·승급·재임용 **기준 점수 대비 반영된 산학협력 실적점수** 평균 반영 비율(%)

$$A = \frac{1}{3} \times \left(\frac{\sum_{j=1}^{c_1} \frac{b_{1j}}{a_1}}{c_1} + \frac{\sum_{j=1}^{c_2} \frac{b_{2j}}{a_2}}{c_2} + \frac{\sum_{j=1}^{c_3} \frac{b_{3j}}{a_3}}{c_3} \right) \times 100\,(\%)$$

ai : 승진·승급·재임용 대상 교수 j의 승진·승급·재임용(i=1:승진, i=2:승급, i=3:재임용)을 위해 필요한 기준 점수
bij : 승진·승급·재임용 대상 교수 j의 승진·승급·재임용(i=1:승진, i=2:승급, i=3:재임용) 심사 시 반영된 산학협력 실적점수
ci : 승진·승급·재임용 대상(i=1:승진, i=2:승급, i=3:재임용) 교원 수(명)

○ 교원 승진·승급·재임용 대상 교원 중 **산학협력 실적 점수가 반영되어 승진·승급·재임용된 교원** 비율(%)

$$B = \frac{e_1 + e_2 + e_3}{f} \times 100(\%)$$

ei : 승진·승급·재임용된 교원 중 산학협력 실적점수가 반영된 교원 수(i=1:승진, i=2:승급, i=3:재임용)
f : 승진·승급·재임용된 교원 수(명)

○ 교원 승진·승급·재임용 심사 시 산학협력 실적 점수에 반영되는 **산학협력 활동요소의 다양성** 비율(%)

$$C = \frac{n-6}{n} \times 100(\%)$$

n : 승진·승급·재임용 시 산학협력 실적 점수에 반영되는 산학협력 활동 항목 수 (개)

○ 교원 승진·승급·재임용 시 **산학협력 실적 점수에 반영된 산학협력 활동 항목**의 평균 비율(%)

$$D = \frac{1}{3} \times \frac{1}{n} \times \left(\frac{\sum_{j=1}^{c_1} h_{1j}}{c_1} + \frac{\sum_{j=1}^{c_2} h_{2j}}{c_2} + \frac{\sum_{j=1}^{c_3} h_{3j}}{c_3} \right) \times 100(\%)$$

ci : 승진·승급·재임용 대상(i=1:승진, i=2:승급, i=3:재임용) 교원 수(명)
hij : 승진·승급·재임용 대상 교수 j의 승진·승급·재임용(i=1:승진, i=2:승급, i=3:재임용) 심사 시 반영된 산학협력 항목 수(개)
n : 승진·승급·재임용 시 산학협력 실적 점수에 반영되는 산학협력 활동 항목 수(개)

2. 점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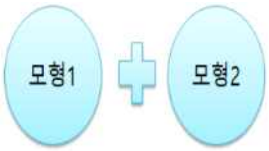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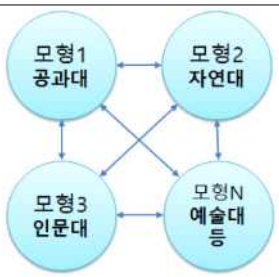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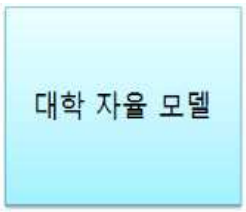
○ 교원 업적평가 관련 규정

○ 교원 승진・승급・재임용 심사 대상자 및 평가 결과 내용 등

붙임2 LINC 3.0 사업 모형설계 예시

○ 산학협력 발전모델 예시를 참고하여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자율적 모형 창출

< 모형 설계 예시 >

가 대학	나 대학	다 대학	라 대학
			
단일 모형	모형간 융합을 통한 제3의 모형 창출	단과대학간 차별화된 모형 운영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자율 모델 제시

< 산학협력 모형 예시 >

구분		모형 예시			
		모형a	모형b	모형c	모형...z
인재상		글로벌 인재	창의적 인재	현장맞춤형 인재	...
역 량		최첨단 연구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현장 실무 역량	...
참여학사 조직		대학원 중심+ 학부참여	학부중심+ 대학원 참여	학부중심	...
대학원	대학원 참여	일반 또는 전문 대학원 참여	학부/학과와 연계된 일반대학원	-	...
	대학원 역할	산학협력 기반 공동연구, 혁신기술 개발 등	기술혁신, 학부생 참여 산학프로젝트 수행 등	-	...
산업 분야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 중심	국가 기간산업 중심	지역특화 산업 중심	...
주요 프로그램		대학원 기술창업, 유료 ICC 등	융복합 캡스톤디자인, 기술 사업화, ICC 등	계약학과 및 주문식 교육과정, 애로기술 지도, ICC 등	...
성과목표		신성장 산업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취업률 제고 등	...
3S 지수		전임교원 참여 진정성, 공유·협업 수준, 지속가능성 등 산학연협력활동의 내재화 수준 반영			

붙임3 고등교육법 상 분교 현황(2021년)

권역	대학명 (설치년도, 소재지)	본교와 거리	입학정원('21)		재정운영형태
			본교(명)	분교(명)	
수도권	**한 양 대** (1979,안산)	50㎞ 이내	2,890	1,875	회계분리
대경강원권	**연 세 대** (1978,원주)	100 ~ 150㎞	3,417	1,319	회계분리
대경강원권	**동 국 대** (1979,경주)	150㎞ 이상	2,685	1,754	회계분리
충청권	**건 국 대** (1980,충주)	100 ~ 150㎞	3,000	1,549	회계분리
충청권	**고 려 대** (1980,조치원)	100 ~ 150㎞	3,889	1,434	회계분리

※ [참고] 본·분교 및 캠퍼스(위치 이전) 비교

구분	본교	분교	캠퍼스(위치이전)
개념	-	본교 이외 지역에 별도의 학교를 신설	본교와 하나의 대학으로 학과, 학부, 단과대학 등 학교시설을 위치변경(일부이전) 또는 통폐합 결과로 2곳 이상의 학습장을 운영
설치재원	법인회계	좌동	교비회계 (일부 법인회계)
학생정원	설치 시 교육부 인가	좌동	본교에서 정원일부 이전
설치 관련 법령 체계	-	「고등교육법」 제2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고등교육법」제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
4대 요건*	4대요건 모두 적용됨	4대 요건 모두 적용됨	교사 및 교지만 적용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전체 확보율 적용)
학교회계 운영	본교회계	본.분교 통합 예.결산 보고 (회계 분리 운영 가능)	좌동
학사운영	「고등교육법」 등 적용	좌동	좌동
회계운영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특례」등 적용	좌동	좌동
중복학과	-	설치 가능	설치 불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	본·분교 각각 평가	본교와 캠퍼스 통합 평가

* 4대요건 :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붙임4 연합형 LINC 3.0 사업단 구성 시 협력대학 관련 참고

❖ LINC 3.0 수행을 위해 **2개 이상의 대학이 대학 간 연합모형을 설계**하는 경우, **주관대학은 단일모형 사업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협력대학은 이하 사항을 적용**

□ 사업단 신청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 단,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대학**, 2022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 제한
  ※ 사업 선정 이후 주관대학 또는 참여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재정지원가능 대학에 포함되는 시점까지 연합형 사업단 전체에 국고 사업비 지원 불가 (각 대학의 자체예산으로 사업 수행)
- **(신청단위) 대학 전체**
- **(신청요건)** 공통 요건 및 사업유형별 신청요건은 참여대학(주관·협력대학) **각 대학이 모두 충족**할 것
  ※ 협력기반구축형을 신청하는 연합모형의 경우, 협력대학이 협력기반구축형의 신청요건을 충족할 것

요건	주요 내용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사업참여 학사조직이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운영 중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

- **(신청방식)** 연합모형 참여대학(주관·협력대학)이 하나의 사업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일모형으로 타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 불가**

□ 선정평가 방안

- **(참여 방법)** 사업계획서 제출 시 주관 대학과 협의를 통한 단일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계획서는 주관대학에서 제출)
- **(연합모형 설계 평가)** 연합 모형의 경우, 선정평가 시 연합모델 구축 필요성, 연합 모형의 타당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성과창출 가능성 등에 관한 추가 평가 실시
  ※ 사업 선정을 위한 임시적 연합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별 특성과 비전이 유사한 범위에서 연합 허용

- **(LINC+ 종합평가 연계)** 참여대학(주관·협력대학)이 LINC+사업 종합평가 결과 성과미달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연합모형 전체**에 평가 득점의 **2%에 해당하는 감점** 부여

-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참여대학(주관·협력대학)의 부정·비리사안에 따른 수혜제한은 **연합모형 전체**에 적용하되, 부정비리 정도는 **참여대학의 산술평균값을 적용***

  * 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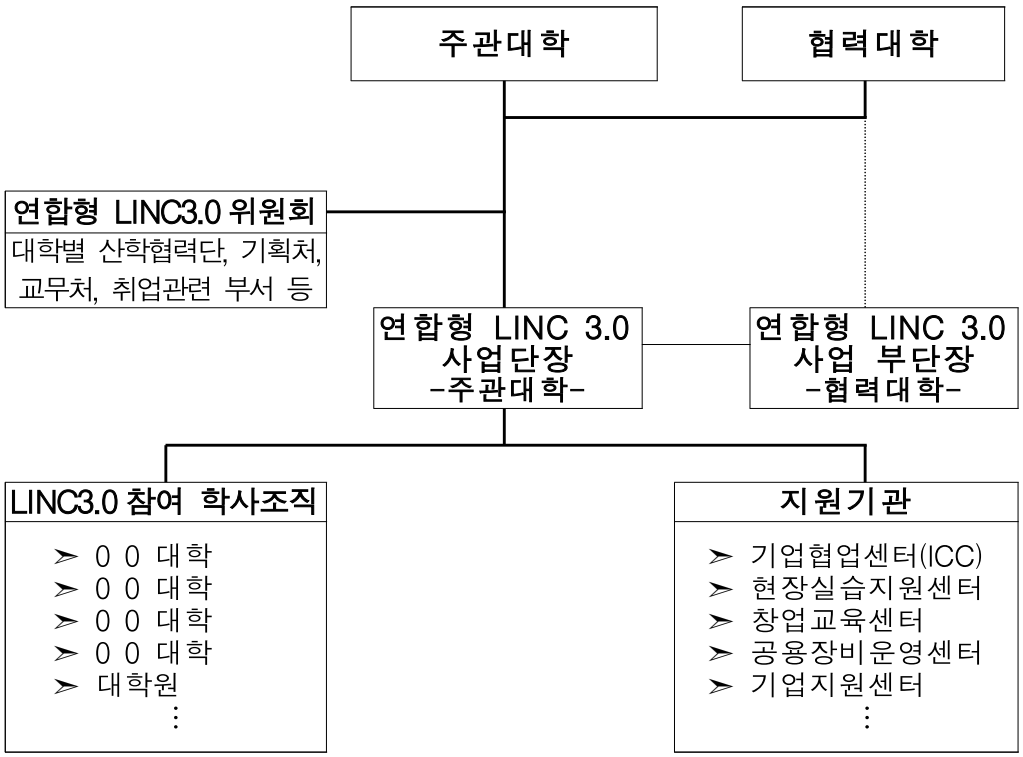
□ **예산 집행 및 성과 관리**

- **(예산 집행)** 사업비 집행은 **주관 대학**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 교류 및 연계 추진

- **(성과 관리)** 핵심성과 공통 및 자율지표의 경우, 주관대학과 협력대학간 협의를 통해 **목표치는 자율적으로 설정 및 관리**

-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수행 시, 주관대학이 협력대학을 참여시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단 구성 예시**



붙임5 1~2단계 LINC 전체 사업기간(10년) 연속 참여대학 현황

권역구분	대학 수	대학명
수도권	6	가톨릭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충청권	4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호남제주권	7	광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대경강원권	7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운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동남권	8	경상국립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위 대학은 (유형3)협력기반구축형은 신청 불가

붙임6 일반대 LINC 3.0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직접비	인건비 (25% 이내)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50% 이내(1인당 최대 4천만원) 지원(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외 • LINC 3.0 사업단, 기업협업센터(ICC),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센터 등의 전담인력 인건비(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 포함) • LINC 3.0 사업 관련 보직수당, LINC 3.0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교원 성과급 및 사업단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 보직수당, 성과급, 인센티브는 합산하여 국고지원금 총액의 5% 범위 내, 1인당 연간 500만원(합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대학본부 소속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 불가하며, 교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불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산학연 협력 친화형 학사제도 구축 및 운영 • 산학연 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산학연 연계 교육방법 개발 및 혁신 • 산업 연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지원 ※ 교육과정 등 개발·운영에 대하여 대학은 자체기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교육·연구과정 개발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개발·운영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구비 • 융·복합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선순환적 산학연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산학교류강좌 운영 •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 창업 동아리 지원금(시제품 제작비 등) • 산업체 재직자의 온라인 팀티칭, 해외 대학과의 공동 캡스톤디자인 등 비대면·글로벌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관련 산학협력 연계프로그램(산업체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강사 초청,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운영비 등 지원 가능 • 공유・협업 연계 산학연 협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산업체 수요 기반의 실습 장비(H/W, S/W)구축 • 산학연 협력 및 교육을 위한 장비 설치, 구입, 임차, 사용 경비 •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등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R&BD) 비용 • 지역산업 및 기업 맞춤형 지원,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 산학연 협력 서비스 원스톱 제공 지원 • 산학연 협력 협의체 운영,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 포럼 • 기업별 성장단계 및 산업분야별 맞춤형 All-SET지원 • 산업체 재직자 교육지원 등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 산학공동 기술(지식) 사업화 비용(시제품 제작 등) • 산학공동기술(지식) 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등 • 지식재산권 등록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비용 • 대학(원)생 기술(지식)창업 프로젝트 비용 • 대학 전체의 산학협력 여건 및 대학체질 개선을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 ※ 대학(원)생 진로·취업·창업 종합 지원 체계 구축·운영 포함 • 대학 조직 간 유기적 산학협력 체제 구축 • 대학 및 사업단 간, 산학연 간 장비·특허·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는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글로벌 기술이전,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성과창출 확산 등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실험실 집적화 등 환경 및 시설 개선 등 ※ 기존 건물 및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나 건물・토지의 매입, 신축, 증축, 개축 등은 불가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5% 이내)	• LINC 3.0 사업단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총괄관리 및 지원 경비 • 산학협력단과 LINC 3.0 사업단 간 연계 협력 추진 비용 등
간접비(3% 이내)		• 대학의 사업단(산학협력단 포함)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경비

※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